|  |  |  |
| --- | --- | --- |
|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  국발[2014]2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 및 직속기구: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의 정신과 국무원 기구 개혁 및 직능 전환의 요구에 따라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할것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1. 총체적 요구사항**  (1)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 '세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중국공산당 18차 전당대회, 제18기 2중전회, 3중전회의 정신을 심도 있게 습득하여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실천한다. 자원배치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시장시스템 미비,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감독관리 불충분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각 유형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2) 기본원칙.  간정방권(簡政放權, 해정기구를 간소화 하고 경영관리권을 기업에게 이관한다.) 원칙. 자원배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주 경영관리권을 부여하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취업과 창업을 촉진시킨다. 시장주체가 법이 금지하는것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행정행위를 실시한다.  감독관리의 적법성 원칙.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법치의 사고방식과 적법한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과정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감독관리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여 법치화된 시장환경을 구축한다.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 각 유형 시장주체의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실현하고 정부 감독관리의 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주체 및 사회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한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 각 급 정부 및 산하부서의 시장 감독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배분하고 정부 부서는 법에 규정한 직책을 반드시 수행한다.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주체의 행위규범·책임, 정부부서의 시장 감독관리 책임 및 지역정부의 관리책임을 실천한다.  사회 공동 관리 원칙. 법률·법규의 규범 기능, 업계조직의 자율 기능, 언론 및 사회대중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사회에 대한 공동 관리를 실현하며 시장주체의 자율 단속과 성실경영을 촉진시킨다.  (3) 총체적 목표  기업의 자주 경영과 공평 경쟁, 소비자의 선택 및 소비 자유, 상품의 자유 유통과 평등 교환에 입각하여 통일적, 개방적, 양호한 경쟁 질서, 성실과 법률 준수 및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 현대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한과 책임 명확, 공평·공정, 투명적, 효율적 및 법치의 보장을 받는 시장감독관리 구조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2020년까지 제도화된 성숙한 시장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시장 진입규제 완화**  시장주체의 자발적인 투자경영 및 민상사 행위가 법률·법규 상 진입을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고 제3자 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국가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는 시장주체의 진입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4) 시장진입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국무원은 시장진입 규제목록을 작성하여 투자경영을 금지 및 제한하는 업종, 분야, 사업 등을 명확히 열거하고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영역에 모든 유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목록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개별적 조절이 필요한 경우 성급 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여 설립등기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전치(前置) 심사허가 항목을 대폭 축소하며 사업면허 획득 후 영업집조를 발급받는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영업집조 수령 후 사업면허를 발급받는 관리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책임진다.) 수속절차를 간소화 하고 수속처리기간을 단축시키며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서 및 세무등기증 "세 증서를 하나로 통합"한 등기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을 격려한다. (현급 이상 각 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에너지·토지자원·수자원 절감, 환경, 기술, 안전 등 시장의 진입기준을 보완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목록 관리를 비롯한 진입전내국민대우의 관리방식을 검토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5)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대폭 축소한다. 투자 심사비준, 생산경영활동 심사비준, 자질·자격 허가 및 인정, 평의합격 표창 및 평가 등 심사비준 사항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허가법 및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설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모두 취소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법제판공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경쟁 단계의 가격 제한을 취소한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성급 인민정부는 위험 통제, 한정 수량의 공공자원 배분, 특정 명예·신분·증명 발급 사항에만 한해 임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고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기존의 행정심사비준을 위한 사전 기술심사, 평가, 감정, 자문 등 유상 중개서비스 사항을 정돈한다. 취소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취소하고 유보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기간과 비용을 규범화 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책임진다.) 완벽한 행정업무센터 및 온라인 접수 창구를 구축하여 행정심사비준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1개 부서 1개 창구' 및 1급 지방정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현급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6) 변칙적인 심사비준을 금지한다. 법에 위반되는 행정허가 항목 설정, 행정허가 조건 확대 및 절차 추가를 엄격히 금지한다. 신고, 등록, 등기, 연도검사, 감제, 심사결정, 인증, 검정, 지정, 넘버링, 면허 갱신 등 형식 또는 행정허가·심사비준이 아닌 기타 명의로 행정허가를 변칙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행정허가의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불법으로 비용 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중개 서비스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과 변칙적인 심사비준, 유료 서비스를 엄격히 금지한다. 과정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는 명의로 이미 취소된 행정심사비준 항목을 회복시키거나 이미 하급기관으로 이관된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관할권을 회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7) 지역보호주의 및 업계 독점을 타파한다. 각 급 정부와 정부부서가 제정한 시장진입, 경영행위 단속 관련 법규·규장·규정을 전면 정돈하여 전국 시장의 통일성과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규정 및 관례를 폐지하고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반되는 우대정책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시정한다. 타지역 제품과 서비스를 상대로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반되는 차별적 진입조건, 비용 항목 및 차별적 가격을 설정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공공사업 및 중요한 공공기초시설 분야는 특허경영 등 방식으로 관리하고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하며 자연독점 업종의 경쟁성 업무에 대한 규제를 취소한다.  (8) 시장퇴출 매커니즘을 개선한다. 법률·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시장주체와 에너지 절감, 안전생산, 식품·약품, 건설공사 품질 등에 관한 강행성 기준을 위반한 시장주체를 법에 따라 단속하고 사업면허 및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각 해당 시장 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상장폐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기업파산 제도를 보완하며 파산정리, 화해, 신탁 관리, 청산 등 규칙과 절차를 최적화 한다. 채무자의 파산 청산 의무를 강화하고 경쟁을 통한 파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시행한다. 자산규모가 작거나 경영 지역범위가 작은 기업 및 특정 소규모기업 간이 파산절차 시행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기업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며 자영업자, 개업하지 않은 기업 및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의 간이 말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금융, 식품·약품, 안전생산, 신문출판 등 분야의 법 위반자 종업금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어린이·노인용품, 교통운수, 건설공사 등 분야의 법 위반자 종업금지 규정을 조속히 출범 및 시범 시행한다.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식푹약품감독관리총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신문출판 및 광전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교통운수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부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3.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법에 따라 생산, 경영, 거래 등 시장행위를 규제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성실경영과 법률 준수를 촉진시키며 시장질서를 유지시킨다.  (9) 생산경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무원 해당 부서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가속화 추진하고 소비단계 경영자의 수문책임제(처음으로 고객의 문의를 받은 직원이 책임지고 문의내용을 해결해 주는 제도) 및 배상금 선불제도를 보완한다. 기업 제품 표준과 서비스 표준의 자진공시 및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소비품 생산경영기업의 제품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제도를 구축한다. 하자제품 강제소환 제도를 개선하고 생태환경 책임제도를 준비하여 국무원의 심사를 받는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식품·약품, 생태환경, 안전생산 등 영역의 책임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시범 시행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기구가 위험을 평가, 모니터링 하는 시장 감독 매커니즘을 조성한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10) 표준화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표준화법의 개정을 가속 추진하고 강제성 표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며 강제성 국가표준 관리를 강화한다.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책임진다.) 신체건강·생명·재산 안전, 국가안전, 생태환경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분야에만 한해 강제성 표준을 제정한다. 시장주체는 강제성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반드시 강제성 표준에 의거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1) 독점과 부정당한 경쟁을 엄격히 처벌한다.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며 혁신과 기술발전을 방해하는 독점계약 및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한다. 경영자 집중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강화하며 인수합병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한다. 자연독점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독점 단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유명 브랜드 상품 복제, 허위 홍보, 가격 사기, 상업목적의 뇌물 수수, 불법 현상판매, 상업목적의 비방, 적법한 수입증명이 없는 상품 판매 등 부정당 경쟁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한다.법에 따라 각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을 격려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및 위조품·불량품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적재산권국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12)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시장행위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요한 상품과 생산자료, 중점 분야에 대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예고·추적 제도, 리스크 관리·예방·통제 매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지역별 제품품질 및 생산안전 위험 경고제도를 개선한다. (질량감독검험검염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사고발생율이 높고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단계와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적, 업계적 및 체계적 리스크를 경계하고 예방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13)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정보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감독·모니터링을 실현하고 원격 감독관리 및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이동통신, 전자기록 등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법 집행 효율을 향상시킨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환경보호부, 문화부, 해관총서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제품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처 확인이 가능하고, 행방 추적이 가능하며, 책임 추궁이 가능한' 정보라인을 구축한다. (상무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전자서명 법률효력 인정 매커니즘 개선을 가속화 한다. (공업및신식화부,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4. 감독관리 신용 기초 확립**  정보 공시, 정보 공유 및 신용 규제 등 수단을 이용하여 성실, 자율, 신용, 신뢰의 사회신용 환경을 구축하고 각 유형 시장주체가 계약을 준수하고 신용을 중요시하도록 촉구한다.  (14) 시장주체 신용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 한다. 시장주체 신용정보 기록제도를 개선하고 신용기록파일 및 교환·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금융, 공상등기, 세금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교통규칙 위반, 통계 등 모든 유형의 신용정보와 모든 신용정보 주체를 망라한 전국적인 신용정보 온라인 통합프랫폼을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신용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 신분증 번호 및 조직기구코드에 기초한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 제도를 구축한다. 신용정보 수집, 저장, 공유 및 사용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별, 업종별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상호 연결·교환을 추진한다. 시장주체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15) 신용 장려 및 징계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시장주체의 신용정보를 참고하여 행정관리를 실시한다. 신용상황에 따라 시장주체를 분류, 분급(分級)하여 동적으로 관리한다. 경영 이상자 명단 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시장 경쟁원칙을 위반 및 소비자,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시장주체의 '블랙 리스트' 제도를 구축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신용을 지키는 시장주체를 장려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경영, 투자, 융자,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 수출입, 출입국, 회사 설립등기, 건설공사 입찰, 정부 구매, 명예 수여, 안전허가, 생산허가, 전문자격 심사 등 면에서 법에 따라 규제하거나 금지하며 신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주체의 시장진입을 금지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16) 신용정보의 사회적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안전, 상업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원칙하에 행정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신용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한다. 신용정보 조회 경로를 확대하여 대중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주체 기초신용정보 및 법·규정 위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에 의거하여 신용서비스 시장을 규범화하고 사회신용 서비스 기구를 육성한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신용서비스 기구와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5. 시장 감독관리의 법 집행 개선**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하고 법 집행에 대한 감독과 행정문책을 강화하며 법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문명성을 확보한다.  (17) 직책 수행에 있어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 및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고 법에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한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규장의 근거 없이 시장주체의 권익에 불이익을 미치거나 시장주체의 의무를 증가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민사활동 참여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18) 시장에 대한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 한다. 과학적인 감독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임의적 추출검사를 위주로 하는 일상 감독검사제도를 보완한다. 법 집행 절차를 최적화, 세부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법 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환경보호부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행정법 집행 절차 및 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감독관리부서의 사건조사 업무와 해정처벌 결정 업무의 상대적 분리제도를 보완한다.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 하고 행정법 집행의 벌률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행정법 집행의 자유재량 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재량권 세부화, 계량화를 추진하며 재량의 범위, 종류, 폭을 공개하고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합리적으로 규범화한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당사자를 거칠게 대해서는 아니되며 인격과 존엄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장려 및 행정화해 등 비 강제적 수단을 적극 보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감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법 집행 기능과 기술검사·검측 기능의 상대적 분리화를 추진하고 기술검사·검측 기구의 법 집행 기능을 취소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19) 시장 감독관리의 법 집행 정보를 공개한다. 지방 각 급 정부 및 산하 시장 감독관리 부서의 권력 목록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권력 운행 절차를 공개한다. 행정심사비준 사항 목록을 공시하고 심사비준의 근거, 절차, 신청조건 등을 공개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법에 다라 모니터링, 추출검사 및 감독관리의 법 집행 근거, 내용, 기준, 절차, 결과를 공개한다.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일자 또는 처벌 결정을 변경한 일로 부터 20일 근무일내에 법 집행 안건의 당사자 기본정보, 안건 개요, 처벌 근거, 처벌 결과를 공개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향상시킨다. 정보공개의 내부심사 시스템, 기록 관리 등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20) 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행정문책을 강화한다. 법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각 급 지방정부 및 산하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단속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감찰, 감사, 행정재심사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강제성 표준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적시에 발견, 제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하였거나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방치로 인해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행정감독관리부서 내지 정부 행정수장의 책임을 추궁한다. 실수로 인해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거나 식품·약품 안전사고, 생태환경 안전사고, 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적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다.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으며 책임자의 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지도 간부에 대해서는 종신적인 책임을 묻는다. (감찰부, 심계서,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6. 감독관리의 법 집행 체제 개혁**  법 집행 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 하며 법 집행 단계를 축소한다. 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1)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부서가 법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시장 감독관리의 법 집행 주체를 통합 및 규범화 하고 도시관리,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 집행권을 상대적으로 집중화 한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법 집행 직책을 직접 수행하고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별도의 법 집행 조직을 설립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부서 산하에 여러개의 법 집행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유사한 조직들을 한 조직으로 통합한다. 여러 부서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직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집행 조직도 점진적으로 통합한다.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설치된 법 집행 조직과 기구편제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법 집행조직을 정리 및 취소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22) 다단계적 및 중복적인 법 집행을 퇴치한다. 반독점, 상품 수출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등 전국 통일시장의 규칙 및 관리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식품안전, 상업무역 서비스 등 등급별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각 급 지방정부 및 산하부서의 감독관리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속지(屬地)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시·현급 정부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식품·약품, 안전생산, 환경보호, 노동보장, 해역·해도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기층 법 집행 부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기층 부서 감독관리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성·자치구 정부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감독·지도·조율 기능과 중대 사건의 조사·처리 기능만 수행하고 독립적 법인 자격을 갖춘 법 집행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가 설치된 시(设区的市)의 시(市)급 부서가 법 집행 직책을 담당하고 산하에 법 집행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 구(區)급 부서 산하에 법 집행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 구(區)급 부서가 법 집행 직책을 담당하고 산하에 법 집행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 시(市)급 부서 산하에 법 집행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 현급 정부 시장 감독관리 체제 개혁을 가속화 추진하고 시장 감독관리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별도의 법 집행조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鄕)과 진(鎭) 정부(동사무소)는 시장 집법권 관할분야 이외의 기타 분야에서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시장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화 수준이 높은 향(鄕)과 진(鎭)은 필요에 따라 법정 절차를 이행 한 후 일부 시장 집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23) 감독관리 및 법 집행 부서간의 협력 매커니즘을 규범화하고 개선한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직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서로 협력하는 업무 매커니즘을 조성한다. 부서간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정보 공유 기준을 작성하고 "정보자원의 고립화"를 타파하여 정보자원의 공개, 공유 및 연동을 실현한다. (상무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부서간, 지역간의 법 집행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시장진입허가 담당 부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생산·경영하는 행위를 적시에 조사하고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24) 시장 감독관리·법 집행 업무와 사법(司法) 업무가 잘 연결되도록 한다. 사건 이송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며 법 집행 협력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고 엄격히 집행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 공안기관, 검찰기관의 사건 통보제도를 구축한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하고 이 사실을 동급 검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행정처벌로 형벌을 대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안기관은 입건을 결정한 후 입건 사실을 사건을 이송한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불(不)입건 또는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급 검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법사건 당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으나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시에 해당 사건을 시장 감독관리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인민법원이 내린 결정과 판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7. 사회 감독관리 매커니즘 개선**  시장 감독관리에 있어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든 적극적 요인을 동원하여 시장의 자발적인 관리와 단속을 촉진한다.  (25) 업계협회 및 상회의 자율 기능을 발휘시킨다. 업계협회·상회가 업계 자율경영규범, 자율공약 및 직업도덕기준을 확립하여 회원의 행위를 단속 하도록 촉구한다. 업계협회·상회가 제품 및 서비스 표준을 제정·발표하고 국가표준, 업계규획 및 정책·법규의 제정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한다. 관련 조직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분규를 조정(调解)하는 것을 지원한다. 업계협회·상회의 자기발전을 강화하여 시장 감독관리 참여 능력을 향상시킨다. (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채임진다.) 한정된 기간내에 행정기관과 업계협회·상회의 인력, 재무자산, 직능, 사무장소 등의 분리화를 실현한다. '한 업종 다(多)협회'를 시행하여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업계협회·상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능을 조속히 업계협회·상회로 이관시키고 업계협회·상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업계협회·상회가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민정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26) 시장 전문 서비스 조직의 감독기능을 발휘시킨다.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조직이 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황, 세금납부 상황, 자본검사, 거래행위 등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조사·확인하고 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심사하는것을 격려한다. (재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검사·검측·인증기구를 정부로 부터 분리시켜 기업 또는 사회조직으로 전환시키고 검사·검측·인증기구의 통합을 추진하며 검사·검측·인증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제3자 검사·검측·인증기구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공증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사법부가 책임진다.) 시장 중개조직 발전을 가속화 하고 행정심사비준 사전단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중개조직의 인력, 재무, 자산을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시장 전문 서비스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27) 대중 및 언론의 감독기능을 발휘시킨다. 대중의 감독 참여를 격려하는 매커니즘을 구비하고 제보장려제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소비자조직의 소비자 분쟁 조정·처리 기능을 활성화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지도 간부가 정부부서를 방문한 대중을 접견하는 제도를 관철하고 신방(信訪, 대중이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정부 기관 등에 상황을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다.), 제보 업무 매커니즘을 개선하여 원활한 신방(信訪) 경로를 조성한다. (신방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각 직능부서의 민원 신고 및 고발 플랫폼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신고, 경제불벌행위 고발, 행정효율 신고 통합 플랫폼을 점차적으로 구축하여 일괄 접수, 해당 직책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 기한부 사건 종결, 일괄적인 업무 감독, 일괄적 평가를 실현한다. (현급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가 책이진다.) 언론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대표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여 불법·범죄행위를 경고하고 대중의 인식도와 경계성을 강화한다. 언론매체는 직업도덕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중을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사회효과를 중요시 해야 한다. 대가성 보도를 통해 생산경영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진다.) 대중이 신고·고발한 문제와 언론매체가 보도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개한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8. 감독관리·법 집행에 대한 보장조치 보완**  제도 구축과 법 집행능력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시장 감독관리의 유법가의(有法可依), 집법필엄(执法必严), 청정염결(清正廉洁),공정위민(公正为民)을 실현한다.  (28) 관련 법률규범을 적시에 보완한다. 시장 감독관리의 실제 수요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관련 법률·법규를 개정 및 보완한다.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취소·하급기관 이양, 후속 감독관리 조치 강화와 연관된 법률·법규·규장·규범성문건을 정리하여 법률 수정, 개정, 폐지 건의를 제기하고 해당 법규·규장·규범성문건을 수정, 개정 또는 폐지한다. 기술표준, 신용정보와 신용보고서, 비안(備案, 신고 또는 등록)보고서 등 정부 관리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법규·규장·규법성문건 비안(備案)제도와 심사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재심사 안건 심리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소송 안건 접수 범위를 확대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29) 법률책임제도를 보완한다. 식품·약품, 생태환경, 안전생산, 노동보장 등 분야 관련 현행 법률제도 상의 벌금 등 법률책임을 수정하고 일단위로 벌금 금액을 산정하는 등 법률책임 형식에 대해 검토한다. 시장 감독관리 법률제도 상의 징계성 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배상금액을 대폭 늘인다. 전문 서비스 조직의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행정보상 및 배상제도를 보완하여 시장 감독관리 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보상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반드시 이행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각 관련 시장 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30) 법 집행 조직의 능력육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급여, 보험, 복지를 부담하는 총 인원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력구조를 최적화 하며 처우, 선임 등 격려·보장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법 집행 역량이 기층 및 일선으로 기울도록 한다. 법 집행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업무평가를 강화하고 필요한 법 집행 장비를 배치하며 법 집행 인력의 종합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이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진다.) 정부 재정예산으로 법 집행 경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실하게 관철하여 시장 감독관리 경비와 능력 육성 비용을 각 급 정부의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감독관리인력 및 법 집행인력이 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수입과 지출 분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벌금 임무 배정을 엄격히 금지하며 수수료·벌금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해당 부서에 할당하는 등 수입과 부서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9. 조직 지도 강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복잡하고 막대한 임무인 바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이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철저하게 실천하여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31) 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본 의견에 규정한 각 항의 조치와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업무 지도 및 조율 매커니즘을 조성·개선하고 총괄기획·조율·업무감독을 강화하며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본 지역과 본 부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감독관리 세부방안 및 실시방법을 연구, 출범하며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32)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키고 중점을 부각시킨다. 인민대중의 반응이 강렬한 문제, 인민대중의 신체건강·생명·재산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중점지역, 중점분야, 중점단계 및 중요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약품, 생태환경, 안전생산, 금융서비스, 온라인정보, 전자상거래, 부동산 등 분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33)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실효성에 치중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본 의견 실천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키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을 유지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본 의견 실천업무에 대한 총괄 조율, 모니터링,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각 항의 임무와 조치를 확실하게 현실화 시킨다.  국무원  2014년 6월 4일 |  | **国务院**  **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  国发〔2014〕2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按照《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精神、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要求，现就完善市场监管体系，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提出以下意见。   1. **总体要求**   　　（一）指导思想。  以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为指导，深入学习领会党的十八大、十八届二中、三中全会精神，贯彻落实党中央和国务院的各项决策部署，围绕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和更好发挥政府作用，着力解决市场体系不完善、政府干预过多和监管不到位问题，坚持放管并重，实行宽进严管，激发市场主体活力，平等保护各类市场主体合法权益，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促进经济社会持续健康发展。  　　（二）基本原则。  　　简政放权。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把该放的权力放开放到位，降低准入门槛，促进就业创业。法不禁止的，市场主体即可为；法未授权的，政府部门不能为。  　　依法监管。更好发挥政府作用，坚持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履行市场监管职能，加强事中事后监管，推进市场监管制度化、规范化、程序化，建设法治化市场环境。  　　公正透明。各类市场主体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政府监管标准公开、程序公开、结果公开，保障市场主体和社会公众的知情权、参与权、监督权。  　　权责一致。科学划分各级政府及其部门市场监管职责；法有规定的，政府部门必须为。建立健全监管制度，落实市场主体行为规范责任、部门市场监管责任和属地政府领导责任。  社会共治。充分发挥法律法规的规范作用、行业组织的自律作用、舆论和社会公众的监督作用，实现社会共同治理，推动市场主体自我约束、诚信经营。  　　（三）总体目标。  立足于促进企业自主经营、公平竞争，消费者自由选择、自主消费，商品和要素自由流动、平等交换，建设统一开放、竞争有序、诚信守法、监管有力的现代市场体系，加快形成权责明确、公平公正、透明高效、法治保障的市场监管格局，到2020年建成体制比较成熟、制度更加定型的市场监管体系。   1. **放宽市场准入**   凡是市场主体基于自愿的投资经营和民商事行为，只要不属于法律法规禁止进入的领域，不损害第三方利益、社会公共利益和国家安全，政府不得限制进入。  （四）改革市场准入制度。制定市场准入负面清单，国务院以清单方式明确列出禁止和限制投资经营的行业、领域、业务等，清单以外的，各类市场主体皆可依法平等进入；地方政府需进行个别调整的，由省级政府报经国务院批准。（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负责）改革工商登记制度，推进工商注册制度便利化，大力减少前置审批，由先证后照改为先照后证。（工商总局、中央编办牵头负责）简化手续，缩短时限，鼓励探索实行工商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和税务登记证“三证合一”登记制度。（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完善节能节地节水、环境、技术、安全等市场准入标准。探索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的管理模式。（发展改革委、商务部牵头负责）  （五）大力减少行政审批事项。投资审批、生产经营活动审批、资质资格许可和认定、评比达标表彰、评估等，要严格按照行政许可法和国务院规定的程序设定；凡违反规定程序设定的应一律取消。（中央编办、法制办、人力资源社会保障部牵头负责）放开竞争性环节价格。（发展改革委牵头负责）省级人民政府设定临时性的行政许可，要严格限定在控制危险、配置有限公共资源和提供特定信誉、身份、证明的事项，并须依照法定程序设定。（省级人民政府负责）对现有行政审批前置环节的技术审查、评估、鉴证、咨询等有偿中介服务事项进行全面清理，能取消的尽快予以取消；确需保留的，要规范时限和收费，并向社会公示。（中央编办、发展改革委、财政部负责）建立健全政务中心和网上办事大厅，集中办理行政审批，实行一个部门一个窗口对外，一级地方政府“一站式”服务，减少环节，提高效率。（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  （六）禁止变相审批。严禁违法设定行政许可、增加行政许可条件和程序；严禁以备案、登记、注册、年检、监制、认定、认证、审定、指定、配号、换证等形式或者以非行政许可审批名义变相设定行政许可；严禁借实施行政审批变相收费或者违法设定收费项目；严禁将属于行政审批的事项转为中介服务事项，搞变相审批、有偿服务；严禁以加强事中事后监管为名，变相恢复、上收已取消和下放的行政审批项目。（中央编办、发展改革委、财政部、法制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  （七）打破地区封锁和行业垄断。对各级政府和部门涉及市场准入、经营行为规范的法规、规章和规定进行全面清理，废除妨碍全国统一市场和公平竞争的规定和做法，纠正违反法律法规实行优惠政策招商的行为，纠正违反法律法规对外地产品或者服务设定歧视性准入条件及收费项目、规定歧视性价格及购买指定的产品、服务等行为。（发展改革委、财政部、商务部牵头负责）对公用事业和重要公共基础设施领域实行特许经营等方式，引入竞争机制，放开自然垄断行业竞争性业务。（发展改革委牵头负责）  （八）完善市场退出机制。对于违反法律法规禁止性规定的市场主体，对于达不到节能环保、安全生产、食品、药品、工程质量等强制性标准的市场主体，应当依法予以取缔，吊销相关证照。（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严格执行上市公司退市制度，完善企业破产制度，优化破产重整、和解、托管、清算等规则和程序，强化债务人的破产清算义务，推行竞争性选任破产管理人的办法，探索对资产数额不大、经营地域不广或者特定小微企业实行简易破产程序。（证监会、法制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简化和完善企业注销流程，试行对个体工商户、未开业企业以及无债权债务企业实行简易注销程序。（工商总局负责）严格执行金融、食品药品、安全生产、新闻出版等领域违法人员从业禁止规定。抓紧制订试行儿童老年用品及交通运输、建筑工程等领域违法人员从业禁止规定。（人民银行、银监会、证监会、保监会、食品药品监管总局、安全监管总局、新闻出版广电总局、质检总局、交通运输部、住房城乡建设部等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1. **强化市场行为监管**   依法规范生产、经营、交易等市场行为，创新监管方式，保障公平竞争，促进诚信守法，维护市场秩序。  （九）强化生产经营者主体责任。国务院有关部门要抓紧推动制修订有关条例，完善消费环节经营者首问和赔偿先付制度，建立企业产品和服务标准自我声明公开和监督制度，建立消费品生产经营企业产品安全事故强制报告制度，修订缺陷产品强制召回制度，建立生态环境损害责任制度，提请国务院审议。（工商总局、质检总局、食品药品监管总局、环境保护部、林业局、法制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试行扩大食品药品、生态环境、安全生产等领域的责任保险，形成风险分担的社会救济机制和专业组织评估、监控风险的市场监督机制。（保监会牵头负责）  （十）强化依据标准监管。加快推动修订标准化法，推进强制性标准体系改革，强化国家强制性标准管理。（质检总局牵头负责）强制性标准严格限定在保障人身健康和生命财产安全、国家安全、生态环境安全的范围。市场主体须严格执行强制性标准，市场监管部门须依据强制性标准严格监管执法。（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十一）严厉惩处垄断行为和不正当竞争行为。依照反垄断法、反不正当竞争法、价格法的有关规定，严肃查处损害竞争、损害消费者权益以及妨碍创新和技术进步的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加大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力度，有效防范通过并购获取垄断地位并损害市场竞争的行为；改革自然垄断行业监管办法，强化垄断环节监管。严厉查处仿冒名牌、虚假宣传、价格欺诈、商业贿赂、违法有奖销售、商业诋毁、销售无合法进口证明商品等不正当竞争行为；依法保护各类知识产权，鼓励技术创新，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的行为。（商务部、发展改革委、工商总局、知识产权局等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十二）强化风险管理。加强对市场行为的风险监测分析，加快建立对高危行业、重点工程、重要商品及生产资料、重点领域的风险评估指标体系、风险监测预警和跟踪制度、风险管理防控联动机制。（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完善区域产品质量和生产安全风险警示制度。（质检总局、工商总局、安全监管总局按职责分工分别负责）依据风险程度，加强对发生事故几率高、损失重大的环节和领域的监管，防范区域性、行业性和系统性风险。（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十三）广泛运用科技手段实施监管。充分利用信息网络技术实现在线即时监督监测，加强非现场监管执法。充分运用移动执法、电子案卷等手段，提高执法效能。（工商总局、质检总局、安全监管总局、食品药品监管总局、环境保护部、文化部、海关总署等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利用物联网建设重要产品等追溯体系，形成“来源可查、去向可追、责任可究”的信息链条。（商务部牵头负责）加快完善认定电子签名法律效力的机制。（工业和信息化部、法制办牵头负责）   1. **夯实监管信用基础**   运用信息公示、信息共享和信用约束等手段，营造诚实、自律、守信、互信的社会信用环境，促进各类市场主体守合同、重信用。  （十四）加快市场主体信用信息平台建设。完善市场主体信用信息记录，建立信用信息档案和交换共享机制。逐步建立包括金融、工商登记、税收缴纳、社保缴费、交通违章、统计等所有信用信息类别、覆盖全部信用主体的全国统一信用信息网络平台。推进信用标准化建设，建立以公民身份号码和组织机构代码为基础的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完善信用信息征集、存储、共享与应用等环节的制度，推动地方、行业信用信息系统建设及互联互通，构建市场主体信用信息公示系统，强化对市场主体的信用监管。（发展改革委、人民银行牵头负责）  （十五）建立健全守信激励和失信惩戒机制。将市场主体的信用信息作为实施行政管理的重要参考。根据市场主体信用状况实行分类分级、动态监管，建立健全经营异常名录制度，对违背市场竞争原则和侵犯消费者、劳动者合法权益的市场主体建立“黑名单”制度。（工商总局牵头负责）对守信主体予以支持和激励，对失信主体在经营、投融资、取得政府供应土地、进出口、出入境、注册新公司、工程招投标、政府采购、获得荣誉、安全许可、生产许可、从业任职资格、资质审核等方面依法予以限制或禁止，对严重违法失信主体实行市场禁入制度。（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十六）积极促进信用信息的社会运用。在保护涉及公共安全、商业秘密和个人隐私等信息的基础上，依法公开在行政管理中掌握的信用信息。拓宽信用信息查询渠道，为公众查询市场主体基础信用信息和违法违规信息提供便捷高效的服务。依法规范信用服务市场，培育和发展社会信用服务机构，推动建立个人信息和隐私保护的法律制度，加强对信用服务机构和人员的监督管理。（发展改革委、人民银行牵头负责）   1. **改进市场监管执法**   创新执法方式，强化执法监督和行政问责，确保依法执法、公正执法、文明执法。  （十七）严格依法履行职责。行政机关均须在宪法和法律范围内活动，依照法定权限和程序行使权力、履行职责。没有法律、法规、规章依据，市场监管部门不得作出影响市场主体权益或增加其义务的决定；市场监管部门参与民事活动，要依法行使权利、履行义务、承担责任。（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十八）规范市场执法行为。建立科学监管的规则和方法，完善以随机抽查为重点的日常监督检查制度，优化细化执法工作流程，确保程序正义，切实解决不执法、乱执法、执法扰民等问题。（工商总局、质检总局、安全监管总局、食品药品监管总局、环境保护部等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完善行政执法程序和制度建设，健全市场监管部门内部案件调查与行政处罚决定相对分离制度，规范执法行为，落实行政执法责任制。建立行政执法自由裁量基准制度，细化、量化行政裁量权，公开裁量范围、种类和幅度，严格限定和合理规范裁量权的行使。行政执法过程中，要尊重公民合法权益，不得粗暴对待当事人，不得侵害其人格尊严，积极推行行政指导、行政合同、行政奖励及行政和解等非强制手段，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推进监管执法职能与技术检验检测职能相对分离，技术检验检测机构不再承担执法职能。（中央编办、质检总局牵头负责）  （十九）公开市场监管执法信息。推行地方各级政府及其市场监管部门权力清单制度，依法公开权力运行流程。公示行政审批事项目录，公开审批依据、程序、申报条件等。（中央编办牵头负责）依法公开监测、抽检和监管执法的依据、内容、标准、程序和结果。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市场监管部门适用一般程序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处罚决定变更之日起20个工作日内，公开执法案件主体信息、案由、处罚依据及处罚结果，提高执法透明度和公信力。建立健全信息公开内部审核机制、档案管理等制度。（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二十）强化执法考核和行政问责。加强执法评议考核，督促和约束各级政府及其市场监管部门切实履行职责。（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综合运用监察、审计、行政复议等方式，加强对行政机关不作为、乱作为、以罚代管等违法违规行为的监督。对市场监管部门及其工作人员未按强制性标准严格监管执法造成损失的，要依法追究责任；对市场监管部门没有及时发现、制止而引发系统性风险的，对地方政府长期不能制止而引发区域性风险的，要依法追究有关行政监管部门直至政府行政首长的责任。因过错导致监管不到位造成食品药品安全、生态环境安全、生产安全等领域事故的，要倒查追责，做到有案必查，有错必究，有责必追。不顾生态环境盲目决策，造成严重后果的领导干部，要终身追究责任。（监察部、审计署、法制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   1. **改革监管执法体制**   整合优化执法资源，减少执法层级，健全协作机制，提高监管效能。  （二十一）解决多头执法。整合规范市场监管执法主体，推进城市管理、文化等领域跨部门、跨行业综合执法，相对集中执法权。市场监管部门直接承担执法职责，原则上不另设具有独立法人资格的执法队伍。一个部门设有多支执法队伍的，业务相近的应当整合为一支队伍；不同部门下设的职责任务相近或相似的执法队伍，逐步整合为一支队伍。清理取消没有法律法规依据、违反机构编制管理规定的执法队伍。（中央编办牵头负责）  （二十二）消除多层重复执法。对反垄断、商品进出口、外资国家安全审查等关系全国统一市场规则和管理的事项，实行中央政府统一监管。对食品安全、商贸服务等实行分级管理的事项，要厘清不同层级政府及其部门的监管职责，原则上实行属地管理，由市县政府负责监管。要加强食品药品、安全生产、环境保护、劳动保障、海域海岛等重点领域基层执法力量。由基层监管的事项，中央政府和省、自治区政府市场监管部门，主要行使市场执法监督指导、协调跨区域执法和重大案件查处职责，原则上不设具有独立法人资格的执法队伍。设区的市，市级部门承担执法职责并设立执法队伍的，区本级不设执法队伍；区级部门承担执法职责并设立执法队伍的，市本级不设执法队伍。加快县级政府市场监管体制改革，探索综合设置市场监管机构，原则上不另设执法队伍。乡镇政府（街道）在没有市场执法权的领域，发现市场违法违规行为应及时向上级报告。经济发达、城镇化水平较高的乡镇，根据需要和条件可通过法定程序行使部分市场执法权。（中央编办牵头负责）  （二十三）规范和完善监管执法协作配合机制。完善市场监管部门间各司其职、各负其责、相互配合、齐抓共管的工作机制。制定部门间监管执法信息共享标准，打破“信息孤岛”，实现信息资源开放共享、互联互通。（商务部牵头负责）建立健全跨部门、跨区域执法协作联动机制。（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对未经依法许可的生产经营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和负责市场准入许可的部门要及时依法查处，直至吊销营业执照。（工商总局、负责市场准入许可的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二十四）做好市场监管执法与司法的衔接。完善案件移送标准和程序，细化并严格执行执法协作相关规定。（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建立市场监管部门、公安机关、检察机关间案情通报机制。市场监管部门发现违法行为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并抄送同级检察机关，不得以罚代刑。公安机关作出立案决定的，应当书面通知移送案件的市场监管部门，不立案或者撤销案件决定的，应当书面说明理由，同时通报同级检察机关。公安机关发现违法行为，认为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作出行政处理的，要及时将案件移送市场监管部门。（公安部牵头负责）市场监管部门须履行人民法院的生效裁定和判决。对当事人不履行行政决定的，市场监管部门依法强制执行或者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1. **健全社会监督机制**   充分发挥社会力量在市场监管中的作用，调动一切积极因素，促进市场自我管理、自我规范、自我净化。  （二十五）发挥行业协会商会的自律作用。推动行业协会商会建立健全行业经营自律规范、自律公约和职业道德准则，规范会员行为。鼓励行业协会商会制定发布产品和服务标准，参与制定国家标准、行业规划和政策法规。支持有关组织依法提起公益诉讼，进行专业调解。加强行业协会商会自身建设，增强参与市场监管的能力。（民政部牵头负责）限期实现行政机关与行业协会商会在人员、财务资产、职能、办公场所等方面真正脱钩。探索一业多会，引入竞争机制。（发展改革委、民政部牵头负责）加快转移适合由行业协会商会承担的职能，同时加强管理，引导其依法开展活动。（民政部、中央编办牵头负责）  （二十六）发挥市场专业化服务组织的监督作用。支持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依法对企业财务、纳税情况、资本验资、交易行为等真实性合法性进行鉴证，依法对上市公司信息披露进行核查把关。（财政部牵头负责）推进检验检测认证机构与政府脱钩、转制为企业或社会组织的改革，推进检验检测认证机构整合，有序放开检验检测认证市场，促进第三方检验检测认证机构发展。（中央编办、质检总局牵头负责）推进公证管理体制改革。（司法部负责）加快发展市场中介组织，推进从事行政审批前置中介服务的市场中介组织在人、财、物等方面与行政机关或者挂靠事业单位脱钩改制。建立健全市场专业化服务机构监管制度。（发展改革委、财政部牵头负责）  （二十七）发挥公众和舆论的监督作用。健全公众参与监督的激励机制，完善有奖举报制度，依法为举报人保密。（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发挥消费者组织调处消费纠纷的作用，提升维权成效。（工商总局牵头负责）落实领导干部接待群众来访制度，健全信访举报工作机制，畅通信访渠道。（信访局牵头负责）整合优化各职能部门的投诉举报平台功能，逐步建设统一便民高效的消费投诉、经济违法行为举报和行政效能投诉平台，实现统一接听、按责转办、限时办结，统一督办，统一考核。（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强化舆论监督，曝光典型案件，震慑违法犯罪行为，提高公众认知和防范能力。新闻媒体要严守职业道德，把握正确导向，重视社会效果。严惩以有偿新闻恶意中伤生产经营者、欺骗消费者的行为。（新闻出版广电总局牵头负责）对群众举报投诉、新闻媒体反映的问题，市场监管部门要认真调查核实，及时依法作出处理，并向社会公布处理结果。（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1. **完善监管执法保障**   加强制度建设，强化执法能力保障，确保市场监管有法可依、执法必严、清正廉洁、公正为民。  （二十八）及时完善相关法律规范。根据市场监管实际需要和市场变化情况，及时修订完善相关法律法规。梳理取消和下放行政审批项目、加强后续监管措施涉及的法律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提出法律修改、废止建议，修改或者废止有关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研究技术标准、信用信息和信用报告、备案报告等政府管理方式的适用规则。完善市场监管规范性文件合法性审查机制，健全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健全行政复议案件审理机制，推动扩大行政诉讼受案范围。（法制办、各相关市场监管部门按职责分工分别负责）  （二十九）健全法律责任制度。调整食品药品、生态环境、安全生产、劳动保障等领域现行法律制度中罚款等法律责任的规定，探索按日计罚等法律责任形式。扩大市场监管法律制度中惩罚性赔偿的适用范围，依法大幅度提高赔偿倍数。强化专业化服务组织的连带责任。健全行政补偿和赔偿制度，当发生市场监管部门及其工作人员行使职权损害相对人合法权益时，须履行补偿或赔偿责任。（各相关市场监管部门、法制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  （三十）加强执法队伍建设。在财政供养人员总量不增加的前提下，盘活存量、优化结构，完善待遇、选拔任用等激励保障制度，推动执法力量向基层和一线倾斜。加强执法人员专业培训和业务考核，配备必要的执法装备，提高执法人员综合素质和能力水平。（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中央编办按职责分工分别负责）全面落实财政保障执法经费制度，市场监管工作经费和能力建设经费全部纳入各级财政预算予以保障，确保监管执法人员工资足额发放。严格执行“收支两条线”制度，严禁下达罚款任务，严禁收费罚没收入按比例返还等与部门利益挂钩或者变相挂钩。（财政部牵头负责）   1. **加强组织领导**   促进市场公平竞争，完善市场监管体系是一项系统工程，各地区各部门要高度重视、统一思想、狠抓落实，力求取得实效。  （三十一）加强领导，明确分工。各地区各部门要深刻认识完善市场监管体系工作的重大意义，认真落实本意见提出的各项措施和要求。各级人民政府要建立健全市场监管体系建设的领导和协调机制，加强统筹协调、督促落实，明确部门分工任务。各地区各部门要按照职责分工，结合本地区本部门实际，研究出台具体方案和实施办法，细化实化监管措施，落实和强化监管责任。加强新闻宣传和舆论引导，确保市场运行平稳有序。  （三十二）联系实际，突出重点。要把人民群众反映强烈、关系人民群众身体健康和生命财产安全、对经济社会发展可能造成大的危害的问题放在突出位置，着力加强对重点区域、重点领域、重点环节和重点产品的监管，切实解决食品药品、生态环境、安全生产、金融服务、网络信息、电子商务、房地产等领域扰乱市场秩序、侵害消费者合法权益的问题。  　　（三十三）加强督查，务求实效。各地区各部门要加强对本意见落实工作的监督检查，推动市场监管体系建设，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国务院办公厅负责对本意见落实工作的统筹协调、跟踪了解、督促检查，确保各项任务和措施落实到位。  　　 国务院  　　　　　　2014年6月4日 |